제32조(휴직)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
2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
3.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
4.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
5.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
6. 공단의 업무와 관련되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 후 일정한 연수를 요할시 연수 기간 <신설 2010.2.10>

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공단의 필요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,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
2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)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거나,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<개정 2011.9.29, 2015.5.27>
3.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, 사고,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할 때 <신설 2017.9.8, 개정 2020.04.16>

③ 직원이 자기계발을 위한 학위취득 등 국내 대학원에 진학 시 학업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명할 수 있다.

제33조(휴직기간)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4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은 다음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제32조제1항제1호 해당자 : 1년 이내
2.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해당자 : 징·소집기간 또는 당해 직무 수행기간
3. 제32조제1항제3호 해당자 : 2년 이내
4. 제32조제1항제4호 해당자 : 3월 이내
5. 제32조제2항제1호 해당자 :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6. 제32조제2항제2호 해당자 :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.<개정 2012.5.25>
7. 제32조제2항제3호 해당자 :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을 포함한 90일 이내 <신설 2017.9.8, 개정 2020.04.16>